

제 2026 - 03회

임 시 이 사 회 의 록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1:30

회의장소 : 백제가든



사회복지
법인

사랑복지재단

제2026-03회 사랑복지재단 이사회의록

1. 회의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11:30 ~ 12:30

2. 회의장소 : 백제가든 (전북 익산시 선화로65길 34-10)

3. 참석인원 : 5명

4. 출석임원 : 대표이사 박두영, 이사 오수한, 이사 이경옥, 이사 김계순, 감사 구본원

5. 상정안건

- (1) 법인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 사랑원 2026년 일반회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3)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4) 사랑원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5)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6. 회의내용

1) 성원보고

의장이 출석 점명하니 임원 9명(이사 7명, 감사 2명) 중 이사 4명,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다.

2) 개회선언

의장이 성원 확인하고 참석한 임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3)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의장이 전차회의록 낭독 후 2026년 5월 13일에 진행된 이사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무수정 통과하다.

4) 보고사항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의장이 사랑복지재단, 사랑원,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보고 하고 본 보고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자 더 이상의 의견이 없어 김계순 이사 동의, 오수한 이사 재청으로 운영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였음을 선언한다.

5) 안건심의

<제 1호 의안 : 법인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장 박두영 : 제1호 의안은 법인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실제 예산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적정한 계정과목 적용 및 예비비 증액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은 71,796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입예산은 후원금수입 28,000천원, 이월금 43,756천원, 잡수입 40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사무운영비 3,127천원, 업무추진비 360천원, 전출금 30,433천원, 예비비 37,87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변경 사유로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실제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임원 명절 선물비를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익산시 지도점검 결과 해당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도록 안내받음에 따라 추석 임원선물비 360천원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원 전출금의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75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출 예산 조정에 따른 잔여 예산 1,22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집행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조정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원 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사 김계순 : 집행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생각하며,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경옥 :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동의와 재청합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사 전 원 : 없습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호 의안 법인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 2호 의안 : 사랑원 2026년 일반회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장 박두영 : 이번 의안은 사랑원 2026년 일반회계 3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입니다. 사랑원 김옥희 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장 김옥희 : 제 2호 의안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192,266천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입소비용수입 41,219천원, 보

조금수입 1,988,141천원, 후원금수입 45,000천원, 전입금 14,653천원, 이월금 64,513천원, 잡수입 38,7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801,019천원, 업무추진비 2,390천원, 사무운영비 78,736천원, 시설비 12,000천원, 사업운영비 193,580천원, 재활사업비 43,821천원, 예비비 60,165천원, 보조금반환금 55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변경 사유로는 신규 영양사 채용에 따른 호봉 변경(5호봉->1호봉) 및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후원에 따라 비지정후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원물품 사용에 따라 생계비를 실제 소요액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와 물가 및 제반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등 주요 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과 예비비를 감액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필수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의장 박두영 :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오수한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 이경옥 : 후원금 증가분과 실제 집행 내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박두영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오수한 :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계순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사 전 원 : 없습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호 의안 사랑원 2026년 일반회계 3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 3호 의안 :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장 박두영 : 이번 의안은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입니다. 임은미 센터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센터장 임은미 : 제 3호 의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조금수입 216,800천원, 전입금 15,780천원, 이월금 27천원, 잡수입 3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32,177천원, 업무추진비 390천원, 사무운영비 32,877천원, 시설비 3,500천원, 사업비 63,636천원, 예비비 6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변경 사유로는 직원 퇴사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해지환급금 6천원을 잡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7,44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3,500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주유비 증가를 반영하여 차량비 8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회차를 조정하여 사업비 4,0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당초 232,637천원에서 6천원 증액된 232,64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박두영 :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경옥 : 실제 집행 내역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 김계순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박두영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경옥 :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사 오수한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사 전 원 : 없습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호 의안 익산시장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 4호 의안 : 사랑원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의장 박두영 : 이번 의안은 사랑원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입니다. 김옥희 원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장 김옥희 : 사랑원 운영규정을 관계 법령 및 시설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보장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직책별로 명확히 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시 후속 선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두영 : 사랑원 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계순 : 관계 법령과 시설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이사 오수한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사 전 원 : 없습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4호 의안 사랑원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 5호 의안 :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의장 박두영 : 이번 의안은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입니다. 임은미 센터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센터장 임은미 :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을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운영규정 제1조 직원의 복무 중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직원의 경조사 지원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경조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두영 : 센터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사 오수한 : 관계 법령을 반영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경옥 :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본 안건에 동의와 재청합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사 전 원 : 없습니다.

의장 박두영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5호 의안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폐회선언

의장 박두영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9월 21일 사랑복지재단 이사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

7. 결의 사항

제 1호 의안 법인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승인 결의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예산 (A)	2026년 2차(B)	증감(B-A)	비고
일반회계	71,796	71,796	0	

제 2호 의안 사랑원 2026년 일반회계 3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결의

구분	2026년 예산 (A)	2026년 3차(B)	증감(B-A)	비고
일반회계	2,203,385	2,192,266	-11,119	

제 3호 의안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26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결의

구분	2026년 예산 (A)	2026년 3차(B)	증감(B-A)	비고
일반회계	232,637	232,643	6	

제 4호 의안 사랑원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결의

현행	개정안
제6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사랑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시설장 2. 위 원: 위원장 및 직원대표, 위원장이 위촉한 자 4인 이상 3. 간 사: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사랑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시설장 2. 위 원: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장, 재활지원팀장, 급식지원팀장, 자립지원팀장, 외부위원 중 위촉한 자 3. 간 사: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면접전형에 의한다. 이하생략	제9조(신규채용) <u>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u> ① 직원의 채용은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면접전형에 의한다. <u>최종합격자가 채용을 원하지 않으면 다음 대기자를 선발한다.</u> 이하생략
제42조 (경조사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9.13>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1일 3.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 1일 4. 배우자 출산: 10일 5.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6.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조휴가에 있어 경조사유가 2종류 이상 중복하여 발생할 때에는 그 중 장기의 휴가일수 1종류만 적용한다.	제42조 (경조사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9.13>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1일 3.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 1일 4. 배우자 출산: 20일 5.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6.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조휴가에 있어 경조사유가 2종류 이상 중복하여 발생할 때에는 그 중 장기의 휴가일수 1종류만 적용한다.

제 5호 의안 사랑원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결의

제12조 (직원의 복무) 1. ~ 3.(생략) 4. 경조휴가 종사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	제12조 (직원의 복무) 1. ~ 3. (현행과 같음) 4. 경조휴가 종사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
---	--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휴가일수 변경>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휴가일수 변경>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2026년 9월 21일

위 사실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 함.

참 석 임 원

대표 이사 박 두 영



이 사 오 수 한



이 사 김 계 순



이 사 이 경 옥



감 사 구 본 원



감 사 심 상 철

